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5월 19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5월 12일

나. 제출자: 정정희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5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5. 19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정정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·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[안 제1~2조] 목적 및 용어 정의
- 2)[안 제3조] 구청장의 책무 규정
- 3)[안 제5조]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한 사항 규정
- 4)[안 제6조]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
 -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
 -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
 -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
 -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등
- 5)[안 제8조]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
- 6)[안 제9조]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에 대한 사항 규정
 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 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, 상담 및 홍보
 - 고도비만, 중복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
 - 인문교양, 직업능력 향상, 기초 한글학습, 문화예술, 학력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
- 7)[안 제10조] 평생교육센터 관리·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규정
- 8)[안 제11조] 평생교육센터의 지도·점검 등에 대한 사항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2)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합 의: 장애인복지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5. 13. ~ 5. 17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,
- 개정의 주요내용은 올해 9월 개관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을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리·운영의 위탁과 위탁업체의 지도·점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.
-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, 상위 법률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과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와 부합하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별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

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8조(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)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,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,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)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
2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, 상담 및 홍보
3. 고도비만,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
4. 인문교양, 직업능력 향상, 기초문해, 문화예술,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